

- 인터넷에 거래되는 의약품은 모두 다 불법! -



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



수 신 회원 및 비회원사
 (경 유)
 제 목 탈크 수입관련 확인서류 제출 알림

1. 환경부 생활환경과-1565(2016.6.22)호 및 1827(2016.7.19)호, 의수협-08-177(2016.8.1)호,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-4287(2016.7.7)호 및 7351(2017.10.24)호 관련입니다.

2. 위 호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석면이 함유된 탈크 원료의 수입 통관 관련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, 표준통관예정보고 시 아래와 같이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알려진 바, 화장품 원료 중 탈크(Talc)를 수입하는 업체에서는 관련업무에 적용 바랍니다.

가. 대 상 : 화장품 제조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탈크

나. 제출서류

- 「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·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」(환경부 고시)에 의한 석면미검출 등이 확인된 시험성적서가 첨부된 환경청의 수입승인통보서. 끝.



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



팀원 **이주현** 팀장 **안상필**

협조자

시행 의수협2017-10-072 (2017-10-25)

홈 페이지 <http://www.kpta.or.kr>

우 06164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, 1801(삼성동, 무역센터)

전화번호 02-6000-1842

팩스번호 02-6000-1850

e-mail leejuda@kpta.or.kr